

청주지방법원 2018. 10. 25 선고 2018가단198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론 종결2018. 10. 11.

판결 선고2018. 10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별지 상속지분과 같이 청주지방법원 1986. 4.
2. 접수 제16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 2. 피고 C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- 나머지 피고들 :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강부영

별지